



COVID Safe 체크리스트: 개인 서비스

2020년 7월 3일 - 정오부터 시작

미용, 네일 살롱, 마사지 (치료 및 비치료), 태닝, 문신 시술소, 스파, 사우나 및 목욕탕

안전한 영업 재개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

1. 영업 재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퀸즈랜드 정부의 코비드19 웹사이트 www.covid19.qld.gov.au에서 해당 사업장의 영업 재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한 규제들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영업을 중단되었던 경우 기기나 설비가 잘 작동하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가스, 전기, 화장실,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식품이나 음료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혹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COVID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TAFE Queensland (<https://tafeqld.edu.au/covid-safe>) 또는 승인된 산업 기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산업 코스 목록은 www.covid19.qld.gov.a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산업의 경우 영업 재개 2주 이내에 COVID Safe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직원들의 웰빙

- 직원들이 아프면 집에 있도록 지시하고, 출근해서 몸이 좋지 않아진 경우에는 즉시 귀가 시킵니다. 직원들에게 급성 호흡기 질환 (기침, 인후통, 숨가쁨)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발열이 있거나 발열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 안전 위험을 고려하고 적절한 저감대책 단계에 따라 관리합니다 - 제거, 대체, 분리, 관리상의 통제 후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장비.
- 실용적이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직원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조치들을 실행합니다.
- 실용적이고 안전한 경우, 평소에 근접한 교류가 요구되는 업무나 절차들을 검토하고, 직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파악합니다.
- 대면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 행정 업무와 같은 일들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재택 근무를 도입합니다.



- 카운터 (휴게실 포함) 뒤에서의 업무절차들을 수정하여 직원들이 서로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제한합니다. 직원들에게 특정된 작업공간을 할당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필요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휴식 시간을 지정합니다.
- 필수적이지 않은 대면 모임, 회의, 교육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화상 회의를 이용합니다.
- 직장에서의 코로나19 조치들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업무 방식과 관행의 변화를 실천하고 직장 내에서 적절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합니다.
- 안내문과 포스터 등을 붙여서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 고객이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매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하는 안내문을 입구에 붙여둡니다. 이 안내문에는 사업체가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상기 증상들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업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실현 가능한 경우,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서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 사업장 안에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사람 수를 최대 50명으로 제한하고 (직원 제외), 일인당 4제곱미터의 거리를 확보하는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200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장소의 경우, 일인당 2 제곱미터씩 한번에 최대 50명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줄을 서거나 대기하는 구역에서는 바닥이나 벽에 사람 간 1.5미터 거리를 보여주는 마킹이나 표시를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에는 서빙 카운터에 설치하는 플렉시글라스 등의 물리적 예방책 도입을 고려합니다.
- 대기 공간의 좌석을 없애거나 최소 1.5미터의 간격으로 좌석을 배치합니다.
- 고객들이 전자 카드 결제, 계좌 입금 혹은 기타 비접촉 결제 옵션을 이용하도록 장려하여 현금 거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제를 통해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는 고객들을 제한하고 카운터에서 고객과의 응대를 제한합니다.

4. 기록 보관

- 성명, 이메일 주소 (이메일이 없을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및 입장 일자**와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고객, 직원 및 계약업자의 연락처 정보를 기록하고 최소 56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록은 코로나19 감염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외비로 안전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5. 위생 및 청소

- 예약 방문 전에 고객들에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립니다. 고객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
 - 몸이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합니다



- 기록 보관을 위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도착하면 손을 씻거나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 예약 방문 시에 고객이 친구나 가족을 동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고객들과 미용치료사들에게 손을 씻는 설비나 적절한 알콜 손소독제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에타놀 최소 60% 혹은 아이소프로판올 최소 70%가 함유된 소독제가 권장됩니다.
 - 고객들과 직원들은 시술 간에 맨발로 있으면 안됩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신발을 착용해야 하고, 혹은 사업체가 일회용 슬리퍼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이외의 다른 위험 (예: 먼지 노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용치료사들은 이미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장갑은 다양한 통제 대책들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미용치료사들이 손을 자주 씻어서 좋은 위생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시합니다. 최소 20-30초 동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양손을 모두 씻어야 합니다. 손 전체에 비누를 골고루 묻힌 후에 물로 헹굽니다. 손씻기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에타놀 최소 60% 혹은 아이소프로판올 최소 70%가 함유된 소독제가 권장됩니다.
 - 기기 및 도구의 공동 사용을 줄이고, 대기 구역에 책, 잡지, 아이패드 등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 제품 테스터나 샘플을 두 명 이상의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구매하지 않을 제품들을 불필요하게 만지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 공동으로 이용하는 간식이나 식수대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자주 접촉되는 구역과 표면을 최소 한 시간마다 세제나 살균제로 청소합니다 (공용 기기 및 도구, Eftpos 기기, 테이블, 카운터 상단 및 싱크대, 탈의실, 화장실 및 샤워실 (적용되는 경우)).
 - 고객들이 사용하는 표면도 고객이 바뀔 때 마다 청소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바뀔 때마다 관련 기기를 적절하게 소독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예약 시간을 정합니다.

6. 사업장에 방문하는 배달, 도급업자 및 방문객

- 사업장을 방문하는 배달 기사나 기타 도급업자들이 직원들과의 교류를 가능한 최소화 하도록 안내합니다.
- 가능한 경우, 전자 서류를 사용합니다. 서명이 필요한 경우, 확인 이메일로 대체될 수 있는지 혹은 배달 물품의 사진이 배달 확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의합니다.

7. 검토 및 모니터링

- 업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건 당국이 제공한 최신 지침과 권고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WorkSafe 웹사이트에서 다룬 COVID Safe Industry 계획의 일부입니다.
- COVID Safe 사업장이라는 증거로서 서명된 체크리스트를 잘 보이는 곳에 공개합니다.

Unite against COVID-19



- 관련 감사 요원이나 집행 요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서명된 체크리스트 사본을 잘 보관합니다. 전자 사본 제시도 가능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와 자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www.covid19.qld.gov.au 및 www.worksafe.qld.gov.au
- 일반적인 직장 관련 불만이 있는 피고용인은 **1300 362 128**번으로 **WHS Queensland**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직장보건안전 (**WHS**) 의무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사업주들은 **1300 005 018**번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조합이나 산업 협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가 이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소비자들은 **13QGOV (13 74 68)**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Work Health & Safety Act 2011
(직장보건안전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사람(들)의
성명:

서명 & 날짜: